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8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이용선·서영석·전재수

김성환 • 이해식 • 윤건영

위성락 • 김주영 • 백승아

김 현 • 윤종군 • 민형배

의원(12인)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 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 조제1항).
- 나.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5개월 이상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8조제1 항).
- 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 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종"을 "3년마다 제1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여 5개월 이상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장

5.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동작업장"을 "직업훈련 지원,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5를"을 "90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등) ①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	
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	
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u>	<u>3년</u>
<u>1종</u>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마다 제1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	
다.	<u>.</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	
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시설관리자로 <u>한정한다</u>)	<u>한정하여 5</u>

가. ~ 다. (생 략) <u><신 설></u>

4. (생략)

<신 설>

- 6. 7. (생략)
- ② ~ ⑤ (생 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저

-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소득증대사업: <u>공동작업장</u>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생략)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u>75를</u>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

개월 이상 지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세사업장				
4. (현행과 같음)				
5.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네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u>직업훈련 지</u>				
원, 공동작업장				
3. (현행과 같음)				
②				
90을				
•				

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